

서울교육대학교 정보공개 운영지침

체 정 2012.11.22.

1차 개정 2024.12.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리 대학 학칙에 따른 모든 부서에서 생산·접수한 정보에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제3조(정보공개 원칙) 우리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 제3조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4조(정보공개 처리방법) ①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총무처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②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에 처리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3.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파·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 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5.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
6.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③정보의 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의 소관 부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4. 12. 31.>

제5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우리 대학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1.>

제6조(행정정보공표 및 대상정보) ①총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총장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총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7조(정보목록의 공개) ①총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우리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31.>

제9조(홈페이지 정보 게재) ①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제1항에 따른 정보 게재 시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1.>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①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교육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12. 31.>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 12. 31.>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내부위원으로,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④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총무처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⑥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대면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2. 31.>

제11조(정보공개교육)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우리 대학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2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3조(심의회의 요청) <삭제, 2024. 12. 31.>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삭제, 2024. 12. 31.>

제15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삭제, 2024. 12. 31.>

제16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삭제, 2024. 12. 31.>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8조제2항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제1항1호)</p> <p>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나. 을지연습 관련 다.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라. 행사종료 전 대통령 세부일정 관련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4.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5.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6.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7.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제1항2호)</p> <p>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나. 비밀취급 인가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라.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2. 국가 간의 회의·회담·협외·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협상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3.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4.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세부기준
<p>(제9조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전략 및 계획 3) 각종 전문 발송 나.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상전략 및 계획 2) 각종 전문 발송 2. 수사관계 조회사항 3.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4.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방재, 방법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5.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6. 위험물의 저장위치 7.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p>(제9조제1항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나. 소송진행 상황 다.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4.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세부기준
<p>(제9조제1항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 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 징계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각종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세부기준
	<p>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p> <p>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p> <p>7.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p> <p>8.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p>
<p>(제9조제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2.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세부기준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제1항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9조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설립 허가 전의 관련 정보 2.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 대규모 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등 확정 전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제11조제1항 관련)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성명		주 소
건 명			
주요내용			
심의요청 사 유			
기 타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청구서 ○ 의견청취서등 		
<p>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서 장 : 과장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귀하</p>			